

2024 출발운영지침

(STARTERS' INSTRUCTIONS)

**본 지침은 공정하고 원활한 출발업무 수행을 위해
경마시행규정의 세부 집행기준으로서 적용하며
심판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.**

2024. 05

한국마사회

목 차

- 제1호 업무총칙
 - 제2호 경주마 조교심사
 - 제3호 출발처분
 - 제4호 출발준비 중 처리사항
 - 제5호 출전마 장구파손 시 조치기준
 - 제6호 경주마 출발보조
 - 제7호 출발 보조장구(수단)에 관한 사항
 - 제8호 출전마 진입에 관한 사항
 - 제9호 출발대 칸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제10호 출발제외에 관한 사항
 - 제11호 출발신호에 관한 사항
 - 제12호 출발불성립에 관한 사항
 - 제13호 출발위원의 통보에 관한 사항
 - 제14호 출발보조원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기준
- 부칙 1. 경주마 조교심사 시행 기준
- 2. 출발레이팅 운영 기준
 - 3. 진입불량마 조치 및 특수보조 장구 사용 기준
 - 4. 출발불성립 시 깃발·메가폰 사용 기준

제1호 : 업무총칙

1. 적용범위

- ① **출발업무와 관련하여 경마시행규정에 언급되지 아니한 것은 이 지침에 따른다.**
- ② **누구든지 이 지침에 반하여 임의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.**
- ③ **이 지침은 출발업무와 관련한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.**

2. 해석

이 지침과 관련하여 출발위원 간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거나 지침에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한 때는 출발수석위원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다.

3. 출발위원의 업무, 역할 및 근무수칙

- ① **출발위원 및 운영원은 항상 공정한 자세로 원활한 출발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**
- ② **수석위원은 업무 전체를 통괄하고 위원 및 운영원에 대한 업무지시 및 현장통제를 한다. 규정 및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자기책임하에 판단하고 집행한다.**
- ③ **위원은 수석위원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수석위원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. 수석위원이 최종적으로 판단·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유로 항명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.**
- ④ **운영원은 출발위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.**
- ⑤ **출발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이는 항상 정숙하고 집중하며 침착하게 행동한다.**

4. 출발현장 통제

- ① **출발 현장에 있으려는 자는 사전에 출발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떠날 때 까지 출발위원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.**
- ② **필요 시 출발위원은 출발현장 입회를 금지할 수 있다.**

제2호 : 경주마 조교심사**1. 조교심사의 종류**

경마시행규정 제50조(마체검사 및 조교상태 심사) 와 관련하여 출발 및 주행 조교심사를 시행한다.

- ① 출발조교심사 : 운승, 진입, 자세, 출발, 발진 등 조교상태 및 출발환경 전반에 대한 순치여부를 판정한다.
- ② 주행조교심사 : 출장, 출발, 주행상태 및 주행능력 등 경주마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.

2. 심사목적

조교순치 상태를 확인하고 경주마로서의 자질을 검증한다.

3. 심사범위

“기승자의 지시(보조자의 유도)에 따른 말의 복종” 에 바탕을 두어 경주마에게 요구되는 조교순치 수준을 확인한다.

4. 심사개요

심사종류	출발심사	주행심사
심사형태	출발 진행과정 시행	경마시행 전체과정 시행
심사방법	출발 진행과정 심사	출장, 출발 및 1000m 주행
심사대상	신마, 출발재심마 등	신마, 주행재심마, 휴양마 등
심사위원	출발심사위원	주행심사위원
합격기준	순치 및 조교상태 양호한 말	조교상태 양호하고 소정의 주파기록을 달성한 말

5. 세부사항

심사방법 및 합격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도 “조교심사시행기준집” 에 따른다.

제3호 : 출발처분**1. 출발처분의 목적**

경주마의 출발조교 수준을 유지·향상시켜 경주 질을 높인다.

2. 출발처분의 대상

출발처분은 조교가 충분치 못하여 악벽을 보인 말에게 행한다.

- ① 운영원의 제압으로 외형적 행동에 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다.
- ② 불가항력적인 외력에 의한 경우에는 처분을 안 할 수 있다.
- ③ 승인된 보조장구(보조수단)를 사용하고 상태가 양호한 말은 그 장구(수단)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는다.

3. 출발처분의 종류

출발처분은 “주의”, “경고”, “재심” 으로 운용한다.

- ① 주의(注意) : 관계자에게 악벽발현을 인지시켜 상태확인 및 자발적인 보수조교를 권고하는 단계
- ② 경고(警告) : 차후 재차 악벽 발현 시 재심처분을 예고하며 강력한 보수조교를 요구하는 최종 유보단계
- ③ 재심(再審) : 보수조교 및 순치여부 확인을 위해 재심사를 지정하는 실질적인 출발처분 단계

4. 출발처분 기준의 구성

- ① 발현행위 특정 : 악벽정도, 상습정도, 복합정도를 고려한다.
- ② 참작사항 : 불가항력적인 외부자극(폭죽(소음), 천둥번개(자연현상)) 등을 고려한다.
- ③ 정책적 고려사항 : 기타 처분정책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.

5. 출발처분 사유서의 작성

- ① 출발처분 시는 별도의 “출발처분사유서” 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.
- ② 출발처분 사유서에는 처분내용, 처분사유, 악벽진단, 조교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다.

6. 세부적인 출발처분은 별도 “출발처분 기준집” 에 따른다.

제4호 : 출발준비 중 처리사항**1. 출발요원의 현장배치**

- ① 출발위원 : 후방업무 담당 및 교신담당은 출전마 입장통로 인근에 위치하여 제반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② 운영원 : 출발보조 담당은 입장통로 인근에, 뒷문 담당은 각 뒷문에 위치한다.
- ③ 기타 : 깃발운영원, 방마방지대 등 각 업무별 장소에 위치하며 특히, 운승공간 내에 임의로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.
- ④ 수의사, 장제사 등 : 현장 근무자는 정해진 곳에 위치하도록 확인하며 촬영 등 일시적 체류 외부인은 사전에 출발위원이 대기 위치를 지정한다.

2. 출발집합 신호

출장한 기수에 대한 출발지점 집합신호는 출발대 상단의 경광 등으로 행한다.

3. 아래의 경우에는 기수의 하마 요청을 허가할 수 있다.

- ① 장안 점검, 장구탈부착, 기수부상의 현장치료
- ② 마체검사, 편자교정 등 말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
- ③ 기수 개인사유로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

4. 장안점검, 장구탈착의 통제

- ① 장구의 변경, 탈착은 심판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안장교정 등 단순한 조정의 경우 기수의 요청이 있고 출발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심판위원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.
- ③ 장안점검, 장구탈착은 기수가 자기책임 하에 시행한다.
- ④ 부득이하게 운영원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출발위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료 후 기수는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한다.

5. 입장보조장구의 처리

심판으로부터 통보받은 입장보조 장구를 착용한 경우 해당 장구는 출발지점에 도착한 즉시 출발위원이 장구를 해제한다.

제5호 : 출전마 장구파손 시 조치기준

1. 장구파손 시 조치

- ① 출발 준비 중 장구 파손이 발생한 때는 원칙적으로 출발 제외 처리한다.
- ②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고 현장에서 교체가 용이한 경우에는 심판위원의 허가를 얻어 예비장구로 교체할 수 있다.

2. 예비장구 범위

- ① 예비장구는 주행 중 안전사고, 현장교체의 난이도, 부담중량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비치한다.
- ② 출발현장에 비치하는 예비장구는 아래와 같다.
 - 고배출 등자만 등자쇠 골레세트일반재갈, 고글 및 투명뎀팬비이저, 채찍

3. 예비장구 교체 금지

- ① 골레세트(특수재갈), 안장, 복대 등 부담중량과 말의 주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은 예비장구로 교체하지 아니한다.
- ② 기수의 요청에 의한 단순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.
- ③ 교체가 가능한 장구라도 교체시간, 교체 중 위험 등 출발위원의 판단에 따라 교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
4. 예비장구 교체 시 유의사항

- ① 예비장구는 기수가 직접 교체하며 교체에 따른 책임은 기수에게 있다.
- ② 불가피하게 운영원의 도움을 받는 때에 기수는 교체과정 입회 및 교체 후 확인을 직접 해야 한다.
- ③ 예비장구가 없거나, 조교사 또는 기수가 교체를 거부하거나, 말의 악벽 등으로 교체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발제외 한다.

5. 편자 탈락 시 유의사항

- ① 출발지점 도착 후 단순 변형 확인 시 심판위원에게 통보 후 정타(재장착)하고 기수는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한다.
- ② 어느 한쪽의 편자가 낙철된 상태인 경우 심판위원에게 통보 후 조교사의 경주출전 희망여부를 확인하고, 양 전지 및 후지의 편자 장착여부를 동일하게 맞춘 뒤 경주 출전을 한다.
- ③ 조교사 또는 기수가 출전을 거부하거나, 편자 교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발제외 한다.

제6호 : 경주마 출발보조**1. 출발보조**

- ① 출발 현장에서 기수의 말 유도를 보조하는 운영원의 보조 행위를 통칭한다.
- ② 출발보조에는 운승보조, 진입보조, 자세보조, 기타보조가 있다.

2. 출발운영원

- ① 출발위원은 원활한 출발진행을 위하여 운영원으로 하여금 기수의 경주마 유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- ② 기수는 자의적으로 운영원에게 지시 및 요청을 할 수 없다.
- ③ 기수는 운영원의 보조를 거부할 수 있다.
- ④ 조교사는 소속 조 관리사의 출발보조를 원할 때는 사전에 출발위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3. 출발보조의 범위

- ① 출발위원의 판단에 따라 출전마의 운승, 진입, 자세 등 전 과정에 있어 기수의 말 유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출발보조는 원활한 진행과 최소한의 위험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운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조행위는 하지 않는다.
- ③ 운영원은 임의대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보조행위를 하거나 주변사람을 위협하게 하는 행위, 기수의 부당한 요청을 수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4. 출발보조의 내용

- ① 운승보조 : 출발지점 집합, 운승과정을 보조한다.
- ② 진입보조 : 출발대 진입, 보조도구(수단) 착용 등을 보조한다.
- ③ 자세보조 : 출발신호 전까지 기수의 자세대기를 보조한다.
- ④ 기타보조 : 장안정비, 사고 시 인마구호 등을 보조한다.

제7호 : 출발 보조도구(수단)에 관한 사항**1. 출발 보조도구(수단)**

- ① 출발 보조도구(수단)란 출전마의 운송, 진입, 자세보조를 통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출발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제도구 및 보조수단을 말한다.
- ② 보조도구(수단)은 일시적, 보조적 범위에 한해 운용되며 말의 능력을 현저히 가감할 수 있는 도구, 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③ 출발위원은 사용가능 도구(수단)를 사전에 한정하며 이외의 것은 출발위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.

2. 사용원칙

- ① 보조도구(수단)의 사용은 사전에 출발위원의 허가를 받거나 출발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② 보조도구(수단)의 사용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출발과정에 한해 사용된다.
- ③ 보조도구는 사전 순치조교를 통해 충분히 적응되어야 한다.
- ④ 보조수단은 통상적인 범위에 한하며 사람 또는 타마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수단은 허용될 수 없다.
- ⑤ 보조도구(수단)는 해당 조교사가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⑥ 조교사의 사용신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용여부는 출발위원이 최종 결정한다. 또한, 필요 시 조교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출발위원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.
- ⑦ 보조도구(수단)는 임시수단으로써 일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, 출발조교의 대체수단으로 남용될 수 없다.
- ⑧ 일회 사용(신청)도구의 종류, 개수 등에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선별하여 사용(신청)한다.

3. 사용신청

조교사는 말의 조교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용신청 하며, 신청도구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.

4. 보조도구(수단)의 종류

구 분	명 칭	사용 대상마 (유효마)	내 용 (대체수단)
보조 도구 · 수단	눈가리개	일반적 진입 거부마	말의 눈을 가림 (마주보고 끌기)
	유도끈	윤승불량마	말의 유도 제어 (양쪽 고삐 잡이)
	로 프	진입, 접근 거부마	말의 전진 물이 (양쪽고삐 및 후구밀기)
	밴 드	진입거부마	말의 후구 밀어 넣기 (후구 밀기)
	선진입	타마 불안에 따른 진입불량마	타마보다 먼저진입
	후진입	출발대 내 대기시간 경과 시 불안한 말	타마보다 늦게 진입
	채찍물이	접근거부마	후방에서 전진 물이 (양쪽고삐 및 후구밀기)
	양쪽 고삐	난폭 거부마 윤승불량마	2인이 고삐제어 (1인 양손고삐)
	격리윤승	타마 불안에 따른 윤승, 진입불량마	후방 격리윤승 및 진입유도 (눈가리개 유도)
	기수하마진입	진입불량마	기수 하마 상태로 진입
	앞문개방진입	진입불량마	앞문 개방 상태로 진입
	꼬리 받치기	자세불량마 (기립, 요동마)	진입 후 말의 꼬리를 위로 올려 받침

제8호 : 출전마 진입에 관한 사항

1. 출발위원회는 원활하고 안전한 출발진행을 위해 출전마의 진입 순서를 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.
2. 출발위원회는 출전마의 진입순서 및 조치요령을 정한 “출발진행 전개도” 를 작성하여 경마고객 및 말관계자에게 사전 배포할 수 있다.
3. 경마일 출전마들에 대한 일반적인 진입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다.
 - ① 진입불량마는 선진입하고 자세불량마는 후진입한다.
 - ② 진입 및 자세불량마는 제 상황을 판단하여 정한다.
 - ③ 장시간 대기에 따른 출발불량마는 후진입한다.
 - ④ 조교사, 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.
 - ⑤ 상기의 일반적인 기준에 불구하고 출발위원회는 필요 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4. 출발위원회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한 방식의 진입보조 수단을 지시할 수 있다.

제9호 : 출발대 칸의 변경에 관한 사항

1. 출발위원은 경마시행규정 제76조(출발대 칸의 변경)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
 - ① 말의 악벽 또는 출발대 문이 파손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정해진 출발대 칸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정해진 출발대 칸을 변경하여 출발시킬 수 있다
 - ② 출발위원은 제①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출발대 교체, 현장수리 등을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다.
 - 출발대 칸 변경 상황 발생 시 조치순서
 -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출발대로 교체 후 진행한다.
 - 예비 출발대로 교체가 불가 시 출발대 칸 변경을 시행한다.
 - ※ 파손된 출발대 칸은 비워두고 해당마와 그로부터 바깥쪽에 위치한 다른 말들은 한 칸씩 바깥으로 이동하여 진행한다.
 - 만약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출발대 칸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사고마를 출발제외 한다.
2. 출발위원은 경마시행규정 제74조(경주제외) 및 77조(출발제외)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
 - ① 해당경주 마감 전 제외마 발생 시 해당 칸 번호판을 제거하고 빈칸 없이 붙여서 진행한다.
 - 경주로 입장 중 마체이상 및 기수낙마·방마로 경주제외 시
 - 경주제외 및 출발제외 사유로 출발시각 연장 시
 - 연속된 번호와 상관없이 2두 이상의 말이 출발제외 시
 - ② 해당경주 마감 후 제외마 발생 시 해당 칸 번호판 유지 및 칸 이동 없이 진행한다.
 - 출발시각 임박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의 경주제외 발생 시
 - 진입 및 출발자세 불량으로 해당말만 출발제외 시
 - ※ 출발대 진입 중 또는 모든 말들이 출발대 진입 완료인 상태로 제외마 조치 후 신속한 경주진행이 필요한 경우
 - ③ 기타 출발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도 이동 변경할 수 있다.

제10호 : 출발제외에 관한 사항

1. 출발위원은 경마시행규정 제77조(출발제외)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

- ① 기수의 육체적인 부상 등의 이유로 기승불가를 호소할 때도 출발제외 할 수 있다.
- ② 말의 사고, 질병 등으로 제외할 때는 수의사의 마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.
- ③ 출발대 내에서의 자세불량이 심하여 기수낙마, 전도 등 말의 부상이 의심될 때는 말을 밖으로 빼서 마체검사를 할 수 있다.
- ④ 상기 ③에 불구하고 자세불량 상황이 일시적으로 끝난 때에는 출발대 밖에서 말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진행할 수 있다.
- ⑤ 어떤 말이 자세불량으로 제외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진입한 모든 말을 출발대 밖으로 뺀 후 현장을 정리한 후 다시 진행한다.
- ⑥ 규정 제77조(출발제외) 제4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도 출발제외할 수 있다.
 - 장구 파손 시 예비장구로의 교체가 불가할 때
 - 편자 중 일부가 탈철되었으나 현장조치가 불가할 때
 - 기수(관리사)가 고의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할 때
 - 기수(관리사)가 출발위원의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를 거부할 때
- ⑦ 발매마감 이후 출발제외가 발생한 때에는 심판의 “출발” 신호를 재 접수한 후 진행한다.

제11호 : 출발신호에 관한 사항**1. “출발신호”**

- ① 출발준비상태가 이뤄진 때에 출발위원의 조작에 의해 출발대 앞문을 열어 경주시작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.
- ② 출발신호는 공정한 출발을 위해 출발위원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출발신호 시점에 영향을 주거나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.
- ③ 출발위원은 최적의 시점에 출발신호를 내려 모든 출전마가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.
- ④ 기수는 내려진 출발신호에 맞춰 최상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⑤ 출발위원의 조작에 의하지 않고 출발대 고장 또는 말의 돌진에 의한 앞문의 개문은 출발신호가 아니다.

2. 출발준비상태

- ① 출발준비상태 : 모든 출전마가 진입을 완료하고 외적장애 요인이 제거된 때 개별적인 출발불가능 상황이 없다면 출발 준비 상태를 갖춘 것으로 본다.
- ② 개별적인 출발불가능 상황 : 출발대 내에서의 낙마, 전도, 장구 파손 등 기수의 통상적인 기승행위가 불가능한 상황
- ③ 기수는 출발대 진입 직후부터 출발신호가 있을 때 까지 자기 책임 하에 출발준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.
- ④ 기수는 안장변이, 등자이탈 등 출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발신호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. 그러나, 출발신호 보류 요청이 출발신호 시점과 맞물리거나 기타 사유로 보류 요청이 수락되지 못한 경우에도 출발신호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⑤ 기수는 말의 자세불량을 사유로 출발신호 보류 요청을 할 수 없다.

3. 출발신호 담당위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출발신호차에 정위치한다.

- ① 해당 경주거리의 출발대 설치 여부
- ② 출발대 앞문 작동을 위한 전기제어장치의 정상적인 연결상태
- ③ 출발대 앞문 잠금상태 및 번호판 배치 상태
- ④ 무전기, 깃발 등 부대장비 및 전방의 깃발운영원 상황
- ⑤ 보조도구 사용마, 끝번마 및 보조자 철수마 등 특이사항
- ⑥ 주로상의 이물질 등 전방상황
- ⑦ 기타 공정하고 완벽한 출발신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기 책임 하에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.

4. 출발대 스위치 고장 등 비상시에는 신호담당 출발위원의 지시 통제에 따라 후방출발위원 또는 출발운영원으로 하여금 비상스위치를 작동하여 출발신호를 내릴 수 있다.

제12호 : 출발불성립에 관한 사항

1. 출발위원회는 경마시행규정 제79조(출발의성립) 제1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기 및 무선 통신 등을 사용 출발불성립을 선언한다.
 - ① 단, 말의 악벽, 기수의 과실 등에 의해 앞문의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영향이 본인에게만 미친 때에는 출발불성립으로 하지 않는다.
 - ② 출발신호 시점과 맞물려 발생한 말의 악벽으로 낙마, 늦출발 등이 발생해도 출발불성립으로 하지 않는다.
 - ③ 출발신호 후에 늦출발, 고착, 낙마 등이 발생한 때에도 출발불성립으로 하지 않는다.
2. 사례별 출발불성립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① 특정 앞문이 출발위원의 육안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늦게 열리고 이로 인해 해당 말이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경우
 - ② 출발신호 전에 말의 돌진 등으로 해당 앞문이 강제로 개방되어 다른 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빨리 출발한 경우
 - ③ 출발신호와 동시에 뒷문이 열려 말이 후진해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경우
 - ④ 출발대 개문 후 앞문의 반동으로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경우
 - ⑤ 운영원, 보조도구 등에 의해 상당한 방해를 받은 경우
 - ⑥ 출발준비상태가 이뤄지지 않은 때에 한 출발신호
 - 출전마 중 일부가 진입하지 아니한 때
 - 기수가 기승하지 않고 말만 진입한 때
 - 출발대 내에서 낙마, 전도, 장구파손 등이 된 때
 - ⑦ 말이 정해진 칸과 다른 칸에 진입해서 출발신호 된 때
(규정 제76조(출발대 칸의 변경) 사례 제외)
 - ⑧ 정해진 출발지점과 다른 지점에서의 출발(경주불성립)

- ⑨ 발매 마감전의 출발신호
 - ⑩ 출발위원이 아닌 자에 의한 출발신호(비상조치 상황 제외)
 - ※비상조치상황 : 스위치 고장으로 출발위원의 지시에 따라 운영원 등이 출발대에 장치된 비상 스위치를 작동하여 출발신호하는 경우
3. 출발위원과 깃발담당 운영원과의 신호 불일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- ① 출발위원은 불성립(깃발신호)을 선언 했으나 운영원이 깃발을 흔들지 못해 경주마가 결승선을 통과한 경우에도 출발 불성립이다.
 - ② 출발위원의 불성립 선언이 없었음에도 신호담당 운영원이 오인하여 깃발을 흔들어 말의 주행을 방해한 때는 경주불성립으로 한다.
 - ③ 출발위원이 불성립 상황을 인지하였으나 불성립 표시(깃발신호)를 하지 못해 경주마 결승선을 통과한 경우에는 경주불성립으로 한다.
4. 출발위원은 출발불성립 상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5. 명확한 출발불성립 상황이 있었음에도 출발위원이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경주가 계속된 때에는 심판위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.
6. 출발신호 담당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출발위원은 자기 판단 하에 출발불성립을 판단하여 선언할 수 있다.
- ① 신호담당 위원이 인지한 때는 신속하게 불성립을 선언한다.
 - ② 후방통제 위원이 인지한 때는 신호담당위원에게 즉시 알리고 무선통신을 사용하여 불성립을 선언한다.
 - ③ 상기 각각의 경우 무선통신 담당위원은 즉시 심판위원회에 불성립 상황을 통지한다.
7. 출발불성립에 의한 재출발 여부는 심판위원의 판단에 따른다.

제13호 : 출발위원의 통보에 관한 사항

1. 출발위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시점에 심판위원에게 통보한다.
 - ① 출전마가 출발진행 중 진입(접근)불량, 자세불량, 출발불량, 발진불량 등 악벽을 보여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경주 종료 후 통보한다.
 - ② 규정 제76조에 따른 출발대 칸 변경을 하는 때에는 즉시 통보한다.
 - ③ 규정 제77조에 따른 출발제외를 하는 때에는 즉시 통보한다.
 - ④ 규정 제79조에 따른 출발불성립을 선언한 때에는 즉시 통보한다.
 - ⑤ 기수가 의도적으로 출발진행 방해, 지연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공정한 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 있는 때는 적시에 통보한다.
 - ⑥ 그 밖에 심판위원에게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적시에 통보한다.
2. 경마개최위원장 또는 심판위원의 판단, 승인, 허가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적시에 심판위원에게 통보하고 그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.

제14호 : 출발보조원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기준

1. 기본 사항

- ① 출발현장에서 모든 이는 정숙하고 집중하며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근무한다.
- ②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용품을 착용한다.
 - 안전화, 보호조끼, 헬멧, 마스크 등
- ③ 계절 및 날씨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복장을 갖춰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가 되도록 한다.
 - 하계·동계 복장, 우천 시 우의 등
- ④ 사고자의 현장 조치
 - 중대한 부상인 경우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한다.
 - 경미한 부상인 경우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약품을 비치한다.

2. 악벽마의 조치 요령

- ① 진입불량마의 조치 요령
 - 진입불량마 조치는 사람과 말의 안전을 고려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도록 한다.
 - 조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.
 - 효과적인 조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력이 보조한다.
 - 출발위원은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다.
 -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보조도구를 사용한다.
 - 세부적인 조치 요령은 별도의 매뉴얼로 정한다.
- ② 자세불량마의 조치 요령
 - 출발운영원은 말의 기립, 돌진, 요동, 하진 시 최대한 말의 악벽을 제어하되, 제어가 곤란한 정도의 악벽을 보일 때는 출발위원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다.
 - 출발위원은 출발대내에서 말의 전도 등으로 운영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조자를 출발대 밖으로 대피시킨다.

- 운영원은 상기②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출발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다.

3. 사고마의 구호 (출발대내 전도마의 발생 시 구호 요령)

- ① 기수 및 운영원 등 사람을 최우선으로 구호한다.
- ②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마의 양쪽 출발대 칸내의 말을 먼저 뒷문 밖으로 후퇴시키고, 그 이후에 사고마를 구호한다.
- ③ 필요한 경우 「전도마 구호담요」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출발위원은 사고마의 구호뿐만 아니라 주변상황에 대한 통제에도 유의하여 후속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